

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9. 24.(금) 15:3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
양문석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- (주)KT 등 3개 사업자 - (2010-58-245~247)

-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추가 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.

2) 이통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- (2010-58-248~250)

-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피심인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 U+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, '09년 상반기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등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을 위반한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 U+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(SKT 129억원, KT 48억원, LGU+ 26억원)을 부과하기로 의결함.

- 아울러 SK텔레콤(주)의 번호이동 전 사업자에 따라 가입자를 차별한 행위에 대해서는 '경고'하기로 의결하고,

- 이통3사와 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'권고'하기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㉠ 위반 내용

- ① '09년 이통시장의 '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'(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 기준)에 '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'을 합산한 '27만원'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(보조금 지급수준에 따른 차별)

※ 위반건수 : SKT의 경우, 전체 조사건수 390,418건 중 185,229건(47%), KT는 110,354건 중 54,173건(49%), LGU+는 133,878건 중 64,530건(48%)

- ②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과 기기변경 가입자 평균 보조금의 차이가 신규 가입자 유치시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증가분과 비용절감분의 합산액(SKT 72,000원, KT 44,000원, LGU+ 43,000원)을 초과(가입형태 별 차별)

※ 위반건수 : SKT의 경우, 전체 조사건수 228,173건 중 140,181건(61%), KT는 101,959건 중 52,623건(52%), LGU+는 124,698건 중 76,035건(61%)

③ 근거 법령

<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>

- ▶ **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①**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4.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
- ▶ **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[별표 3] IV. 5.**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전기통신역무의 요금, 번호 및 **전기통신설비** 등을 **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**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

② 처분 내용

① 시정명령

-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

·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, 대리점에 공표(SKT, LGU+ : 9일, KT : 10일)

- 업무처리절차 개선

·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통시장의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정책장려금·수수료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

·번호이동/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간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장려금·수수료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

·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출고가, 실제 판매가 등을 계약서에 기재

·이통사와 제조사의 정책 장려금 분담액을 정책서에 분리·기재하는 등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조사 재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

- 이행결과 보고

·각각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

② 과징금 부과

-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SKT는 129억원, KT는 48억원, LGU+는 2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

3)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- (2010-58-232)

○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7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, 2011년도 공익채널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된 「2011년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(안)」을 ‘공익채널 방송분야’는 제1안으로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① 공익채널 방송분야 : 현행 「공익성 방송분야 고시」에 따라 제1안대로 3개 분야 채널 선정

< 공익성 방송분야 >

방송분야	전문편성내용
사회 복지	○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이익실현에 불리한 사회적 소수 를 대변하고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○ 저출산·고령화 사회 에 대비하여 육아·어린이, 노인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
과학·문화 진흥	○ 순수예술, 공연예술, 예술교육 등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진흥 을 도모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와 이해 를 제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○ 이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기초과학, 기계전자, 생명과학, 정보통신기술, 환경, 저탄소 녹색성장 등 과학기술 분야의 이해 및 발전 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
교육 지원	○ 어린이·청소년의 공교육 보완 을 통해 과외대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, 지역·계층간 교육기회 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○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, 직업교육, 인터넷 윤리교육 등 방송의 사회 교육 기능 을 신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

②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 계획

-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계획을 근거로 제출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함
- 공익채널 선정여부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함

※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며, 분야별 전문가 7인(심사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

③ 심사항목 및 배점

심사항목	배점
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	200
공정성·공익성 및 실현가능성	300
운영계획의 적정성	300
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	100
시청자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	100
합 계	1,000

※ 2007년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및 (구)방송위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처리하되, 25점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

③ 선정기준

- 심사결과 총점 65% 이상, 심사항목별 배점의 40% 이상 획득한 사업자 중 방송 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

사. 보고사항

1) 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「방송법」 제6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의거,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을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하여 마련한 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정안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.

o 주요 내용

① 시청점유율 산정대상

- (전체 텔레비전 방송) 방송사업자와 IPTV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
- (특정 방송채널)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하되, 그 텔레비전 방송채널이 IPTV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

②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

- (구독률 산정 방법)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동일하게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를 기준으로 산정

③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

- **(환산 방식)**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,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체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시청점유율로 환산

④ 매체교환율

- **(산정 기준)**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함
 - 이 경우 매체영향력은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며, 측정 결과값을 산술 평균함
- **(매체교환율 공표)** 매체교환율은 매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

⑤ 시청률의 합

- **(산정기준)** 시청률의 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직전년도 연평균 시청률 자료를 기준으로 함

⑥ 시청점유율 조사

- **(기본계획)** 방통위는 조사채널, 조사방법, 조사규모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
- **(조사원칙)**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표본의 대표성, 조사대상의 적정성, 조사방법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

⑦ 시청점유율 산정기간

- **(산정기간)** 시청점유율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년도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불가피한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
- **(시청점유율 산정)** 시청점유율은 아래 기준에 따라 합산
 - 해당 방송사업자의 본인 및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: 전부 반영
 -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: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비율을 곱하여 반영

⑧ 시청점유율 산정 방법

- 해당 방송사업자의 본인 및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: 전부 반영
-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: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비율을 곱하여 반영

⑨ 일간신문 구독률 합산

- 해당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: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에 전부 반영
-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: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

⑩ 자료제출

- **(방송사업자)**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(주주구성, 특수관계자 현황 등)를 제출하도록 규정
- **(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)**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(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)이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,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.

6. 폐 회 (19:10)

※ 18:50 정회, 19:00 속개